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233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대표발의자 : 임이자 • 박대수 • 송언석

김형동 · 김석기 · 김병욱

김성원 • 이명수 • 추경호

이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 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.

그런데,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·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4조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4조의 제목 중 "사업주"를 "사업주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"를 각각 "중·소기업 사업주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중·소기업 사업주"를 "중·소기업 사업주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중·소기업 사업주"를 "중·소기업 사업주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1항에 따라 이 법의적용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"를 "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등"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 사업주등"이라 한다)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

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24조(중・소기업 사업주에 대 제124조(중・소기업 사업주등에 한 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 대한 특례) ① -----하는 중・소기업 사업주(근로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 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 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조 -----. <후단 삭제>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 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 로 본다. <신 설> ② 제1항에 따른 중・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중・소기업 <신 설>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 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 족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 사업주등"이라 한다)은 제5조

- ②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 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 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 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으로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
 을 받는 중·소기업 사업주의
 보험료의 산정,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, 보험료의 신고 및

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
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.
④ 중·소기업 사업주등
⑤ 중・소기업 사업주등
<u>⑥</u> 제4형
· ⑦ 중·소기업 사업주등
<u> </u>
·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·
소기업 사업주등
<u> </u>

납부, 보험 관계의 소멸, 그 밖	
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	
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